

발송번호: 9-5-2023-065335418

발송일자: 2023.07.18.

제출기일: 2023.09.18.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허고객번호: 219999012596)

주 소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본

주 소

지정된변리사 김남혁 외 2명

출 원 번 호 40-2022-0054872

상 품 류 제 9 류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의견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연장)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 절 이 유

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무역투자24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유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 이 출원상표 ‘무역투자 24’ 는 ‘24시간 쉬지않고 무역투자관련 업무를 하다’ 정도로 관
념될 수 있어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못해 표장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고, 지정상품 관련하여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이기 때문에 공익상 이를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상품 : 전부. 끝.

2023.07.18.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신우정 _____

1.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
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042-481-8107(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
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문산동, 정부대전청사)